

##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주택 등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생활 안정과 피해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 지원내용·지원제외, 지원신청(안 제4조 ~ 제7조)
- 지급결정, 처리비용 환수(안 제8조 ~ 제9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0. ~ 2021. 10. 26.( 7일간)

##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하다.

### 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1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
- 2) 전화 : 061-830-6065
- 3) 팩스 : 061-830-5595
- 4) 고흥군의회 홈페이지 : <http://igoheung.com>

## 7.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061-830-60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고흥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 소: 500만원
2. 반 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을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3.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 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주소			
화재현황	화재일시			
	위치			
	피해정도 및 화재경위			
화재폐기물 처리내용	처리일시			
	처리업체명			
	처리비용			
계좌정보	금융기관			
	계좌번호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신청합니다.

읍·면장 확인란

년 월 일

신청인(피해자): (인)

**고 흥 군 수 귀 하**

증빙서류:

-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영수증(처리업체 발급) 1부.
- ② 화재증명원(119안전센터 발급)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고